

대중가요의 창작성 요소에 관한 고찰

김혜정*

¹케이씨대학교 음악학부 기독교실용음악, 상명대학교 대학원 뮤직테크놀로지학과

A Study on the Creative Elements of Popular Music

Hye Jung Kim^{1*}

¹Dept. of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KC University, Dept. of Music technology, Sang-Myung University

요 약 185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음악 저작권은 건축이나 미술 등의 분야처럼 시작적으로 고정되어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는 다르게 곡 시간의 흐름에 의한 저작물이다. 음악 저작물의 보호되어지는 범위는 다른 분야의 저작물과 같이 전체 음악이기 보다 음악저작물 안의 각각의 요소와 구조를 분석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보호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 표절에 관한 이슈 중 창작성 판단은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곡 안의 아이디어나 창작요소의 판단은 중요한 논점이다. 창작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해당 표현이 창작의 표현에 해당하는 음악적 요소에 대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아닌 산업과 학계에서 검토되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또한 오늘날 대중가요는 저작권을 보호받는 저작물 중 창작적 표현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통해서 대중가요의 창작적 요소와 비창작적 요소를 구분하고, 창작적 표현 요소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시론이 되고자 한다.

Abstract Music copyright began in 1850 in France and, unlike other copyrighted works such as architecture or arts, which are based on visual conditions, copyrighted music is based on trends of the times. The appropriate range of protection for musical works is not the entire music, but the part that is determined to be a creative expression deduced from the analysis of the musical structure. Concerning the issue of plagiarism in popular music, the determination of creativ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whether a piece of music encroaches on the original copyrighted works or not. However, determining whether a work is an element of a previously copyrighted work should be achieved through a consensus formed by members of the relevant industry and academia rather than the cou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creative and non-creative elements of popular music, in order to create a classification that can enable musical creators to provide a consensus on the elements of creative expression.

Keywords : Creative Musical Elements, Creative of popular music, Musical Plagiarism, Instance of Plagiarism, Music Copyright

1. 서론

오늘날 대중음악의 창작의 방식은 클래식 시대나 블루스, 재즈시대의 창작과는 음악의 구조나 성질 그리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음악의 변화는 작곡자의 예술성을 표현하는 시대에서 대중들이 원하는 음악을 만드는 시대로 변화하였

고, 악보에 의해서 연주되던 음악에서 컴퓨터를 통해 트랙을 완성하는 시대로 변화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음악이 많은 변화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반면에 모든 음악은 12음계 안에서 창작되어 진다는 점에서 불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음악의 멜로디는 창작자가 가지고 있는 악상을 12음

*Corresponding Author : Hye Jung Kim (KC University, Sang-Myung University)

Tel: +82-2-2600-2599 email: hyejung8455@gmail.com

Received March 31, 2016

Revised (1st April 7, 2016, 2nd April 14, 2016)

Accepted May 12, 2016

Published May 31, 2016

계 안에서 일정한 형식 또는 작곡의 방법을 통해 표현하는 지적재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재산인 음악은 저작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법에서 보호되고 있다. 185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음악 저작자의 권리는 일반 다른 저작물과는 다르게 시간적인 흐름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되어지는 범위는 하나의 전체 음악이기 보다는 음악의 구조를 분석하여 그 안에 창작적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보호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미디어 상에서 벌어지는 대중음악의 표절에 관한 이슈는 대중들의 관심 속에 더 이상 음악인들만의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다. 최근 박진영이 작곡한 ‘Someday’와 김신일이 작곡한 ‘내남자에게’의 표절 소송은 우리나라 음악 저작물 침해판단 사건 중 대법원 판결이라는 최초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인 김신일이 작곡한 ‘내남자에게’의 창작성에 관한 판결에서 기존에 유사한 음악(Hosanna, God Happens, Butterfly fly away)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원고 대비 부분은 창작성이 없는 멜로디라고 판단된다며 본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하였다. 우리는 본 사건에서 피고 박진영이 작곡한 ‘Someday’가 원고의 음악을 표절을 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원고 김신일의 ‘내남자에게’의 창작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대중음악의 창작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창작성의 기준은 법원에서 판결되기에 앞서 음악을 창작하는 음악인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기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에 반해 법원은 음악창작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창작적인 음악의 관용적 표현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1]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중음악의 창작적 요소에 관한 정리를 통해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 창작적 관용적 표현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대중음악의 구성요소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및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대중음악은 창작자의 상상에서 나오는 음율적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창작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 요소를 음악의 독창적인 표현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2] 이는 음악의 모든 요소들을 법에서 보

호 한다면 이후에는 만들어 지는 후속 작품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새로운 창작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장르, 리듬, 화성 등 이러한 비 창작적 요소들은 누군가 새로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장르, 리듬, 화성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 한대로 대중음악발전의 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3]

다음은 대중음악의 창작적 요소에 파악하여 대중음악에서의 창작의 본질적인 요소를 정리해 보자.

2.1 대중음악의 창작적 요소

음악에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음악의 3요소’로 정의하며 멜로디(melody), 리듬(rhythm), 화음(harmony)으로 나눈다. 이 3가지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 배열됨으로서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음악의 3요소는 클래식 시대의 서양음악과 블루스, 스윙 등의 재즈시대 음악 그리고 대중음악의 공통적인 음악 요소로서 음악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 이러한 음악의 기본 3요소는 법원의 판결에서도 판단의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chord)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음악저작물의 경우 인간의 청각을 통하여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표현물로...(중략)...음악저작물이 인간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의 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음의 배열 가능성은 이론상으로 무한대이나 그 중 듣기 좋은 느낌을 주는 경우는 한정되고 나아가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경우는 더욱 한정되며 사람의 목소리가 포함되는 가창곡의 경우 더욱 제한된다.“ (수원지방법원 2006. 10.26. 선고 2006가 합 8583판결).

이처럼 음악의 3가지 요소 중 멜로디(melody)는 인간의 감정을 음악으로 나타내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간에게 기억되기 가장 쉽고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요소라는 것은 음악인들과 법원 그리고 대중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 될 것이다.

리듬(rhythm)은 음의 길고 짧음과 쉼여림이 시간적으로 조합하며 음악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템포(tempo)와 박자(time)에 따라서 다이내믹(dynamic)을

형성한다.

화성(harmony)은 화음(chord)의 연속으로서 높이가 다른 음을 두개이상 동시에 울리면서 리듬 과 멜로디(melody)를 화려하게 만들어 음악의 깊이와 폭을 넓게 해주는 요소이다.

음악의 3요소에 대한 각각의 기본 정의와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을 종합해보면 리듬(rhythm)과 화성(harmony) 부분은 음악의 주요 3요소 중에 속해 있지만 창작적인 요소이기 보다는 편곡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간접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음악의 창작적 요소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창작성 부분과 비창작적 요소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Swirsky v. Carey의[11] 사건과 Johnson v. Gordon 사건[12]의 경우 법원은 두 곡의 침해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을 멜로디라고 하여 두 곡의 멜로디를 비교하였다. 반면 최근 미국에서 판결된 Pharrell Williams ‘Blurred Lines’ 과 Marvin Gaye ‘Got to Give It Up’사건의 경우 미국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두곡이 ‘feel’이 같으며 저작물 침해 판결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Pharrell Williams가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Marvin Gaye ‘Got to Give It Up’의 영감을 얻어 ‘Blurred Lines’를 작곡했다는 내용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5]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과정 중 ‘의거성’ 요건에 해당하여 이를 인정한 사실로 정리하자면 원고가 피고의 작품에 의거하여 표절하였고 유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Feel’ 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리된다.[13]

2.2 대중음악 비창작적 요소

음악 저작물에서 특정한 비창작적인 요소들이나 방법론을 정리해 놓은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 않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악적 지식 또는 산업의 관례와 관습에서 도출된 요소들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느 작곡가나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누군가 본인과 같은 장르를 사용하였다고 이를 표절 또는 침해의 범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음악저작물의 관용적 표현은 음악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비창작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악기구성, 느낌, 장르, 조성 등은 음악을 창작할 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창작적 요소들이다. 음악의 교육현장에서 도출된

요소들을 정리하여 이론화 시켜 창작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비창작적 요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비창작적 요소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차용해서는 안 되는지 이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motion	The study of music and emotion seeks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human affect and music. It is a branch of music psychology with numerous areas of study, including the nature of emotional reactions to music, how characteristics of the listener may determine which emotions are felt, and which components of a musical composition or performance may elicit certain reactions. The field draws upon an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uch areas as philosophy, musicology, music theory and aesthetics, as well as the acts of musical composition and performance.
Key	In music theory, the key of a piece is a group of pitches, or scale upon which a music composition is created in classical, Western art, and Western pop music.
Music Genre	A music genre is a conventional category that identifies some pieces of music as belonging to a shared tradition or set of conventions. It is to be distinguished from musical form and musical style, although in practice these terms are sometimes used interchangeably.

Fig. 1. Example of Non-Creative Musical Element

[Fig. 1]은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의 요소중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창작적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다. 위의 요소들은 일반적인 대중이 비슷하게 느끼고 차질 표절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확히는 관용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비창작적 요소라 볼 수 있다.

2.3 대중음악 창작성 판단

앞에서 살펴본 대중음악의 창작적인 요소와 비창작적인 요소를 토대로 실제 표절 사건에 적용하여 법원 판단과 음악창작자의 논란이 되었던 음악들을 예로 분석하여 살펴보고도록 하겠다.

2.3.1 와이넷 ‘파랑새’ vs 씨엔블루 ‘외톨이야’

그룹 ‘와이넷’의 작곡가는 자신이 2008년 작곡한 “파랑새”라는 곡을 그룹 ‘씨엔블루’가 “외톨이야” 라는 곡에서 표절하였다고 소를 제기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13. 선고2010가단86875판결) 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에서 해당 곡들의 악보를 비교해 봤을 때 후렴구 첫째

마디는 일치하지 아니하며 후렴구 두 번째 마디의 동형 진행부분이 유사하나 피고가 제기한 다른 곡(오!가니, 지중해)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관용적 표현으로 원고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피고와 원고의 음악에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하였다. 다음은 해당 악보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자.



Fig. 2. Whynot 'Blue Bird' key of C



Fig. 3. CNBLUE 'Loner' key of C

[Fig. 2]은 원고의 “파랑새” 작은악절(phrase) 부분이고, [Fig. 3]는 피고의 “외톨이야”의 작은악절(phrase) 부분이다. 이중 법원은 두 음악의 각각의 두 번째 마디 부분이 동일하지만 유사한 부분은 이전에 몇몇 곡에서도 발견된다고 하여 선행 저작물의 예를 들었다.

	Compare with prior works
Pa-Rang-Sae	
Waye-Tol-ee-ya	
Ji-Joon-Hae	
O-Ga-Nee	

Fig. 4. Motif Development by Pitch Variation

[Fig. 4]의 악보는 원고와 피고의 유사부분과 선행 저작물의 악보이다. 이중 법원이 유사하다고 판시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Compare with similar parts
Pa-Rang-Sae	
Waye-Tol-ee-ya	
Ji-Joon-Hae	
O-Ga-Nee	

Fig. 5. Motif Development by Sequence

[Fig. 5]는 법원이 원고의 두 번째 마디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법원은 원고의 ‘파랑새’와 선행 음악인 ‘지중해’, ‘오가니’는 서로 유사한 멜로디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창작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역시 원고의 곡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이 사건에서 음악의 비교 범위를 마디별로 분류하여 비교 한 것은 법조계의 생각과 음악전문가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그 비교 범위에 대한 아쉬움은 남게 된다. 즉, 원고의 곡인 ‘파랑새’의 두 번째 마디와 ‘지중해’의 세 번째 마디, ‘오가니’의 세 번째 마디를 비교한 것은 음악의 흐름이나 멜로디의 작곡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마디별로 잘라서 비교 한다면 수많은 음악들이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3.2 ASH ‘내 남자에게’ vs IU ‘Someday’

다음은 작곡가 ‘김신일’씨가 자신이 작곡 하여 2005년 발매된 “내 남자에게”와 2011년 방영된 드라마 OST에 수록 되었던 ‘박진영’이 작곡한 “Someday”가 유사하다며 법원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서울고등법원 2013.1.23.선고 2012나24707판결)

원고인 ‘김신일’ 작곡가는 “Someday”가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 8마디와 유사하다며 음악저작물 침해라

는 주장하였다. 피고인 작곡가 ‘박진영’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곡과 유사한 선행저작물을 예로 들어 원고의 곡이 대중음악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라며 원고의 음악은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곡의 유사한 부분인 후렴구를 검토해본 결과 전반부 4마디의 멜로디, 화음, 리듬이 동일하다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악보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자.



Fig. 6. Phrase of ‘To My B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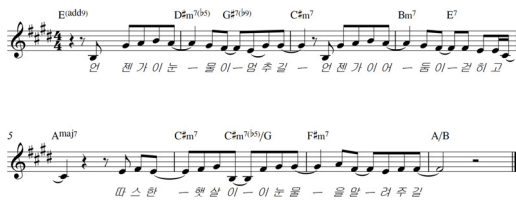


Fig. 7. Phrase of ‘Someday’

[Fig. 6]는 “내남자에게”의 후렴부분이고 [Fig. 7]는 ‘Someday’의 후렴부분 8마디이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도 피고가 제시한 선행 작품의 멜로디와 원고의 멜로디를 분석하여 원고의 창작성을 판단을 하였다.

Hosanna	<p>C C/E F F/G C F G</p> <p>The an gels bow down at the thought of you The dark ness gives way... to the light... for you</p>
Experimental Film	<p>Am F G C</p> <p>It's for this, expe rimen... tal film which nobody know about... and which</p>
Nae-NamJa-e-ge	<p>C^{add9} Bm^{7(b9)} E^{7(b9)} Am⁷ Gm⁷ C⁷</p> <p>I'll al ways be there... for you. I swear 변하지 않을 - 게야 - 이맘</p>
God Happens	<p>C^{add9} Bm^{7(b9)} E⁷ Am⁷ Gm⁷ C^{add9}</p> <p>Peo ple will leave... you out, to die... And not... ven care that they made you cry</p> <p>Am⁷ C/E Am⁷ Dm⁷ Dm⁷ G^{add9}</p> <p>And the more you try to make it right It seems like no thing ha ppens</p>

Butterfly Fly Away	<p>f^{mf}add9 C/E Dm⁷add9 C/E</p> <p>And when I coul_ dn't sleep at night... Scared things wouldn't turn out_</p> <p>f^{mf}add9 C/E Dm⁷ G</p> <p>right... you would hold_ my hand and sing to me_</p>
Someday	<p>C^{add9} Bm^{7(b9)} E^{7(b9)} Am⁷ Gm⁷ C⁷</p> <p>언젠간 이눈 - 물이 - 멈추길 언젠간 이어 - 돌이 - 곁히고</p> <p>f^{mf}add9 Am⁷ Am^{7(b9)/E^b Dm⁷ f^{mf}add9 G⁷}</p> <p>- 따스한 - 햇살 이 - 이 눈물 - 을 말 - 러 주길</p>

Fig. 8. Motif Development by Altered/Inversion

[Fig. 8]은 원고 원고의 ‘내남자에게’와 피고가 제기한 선행 저작물의 유사 부분을 비교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내남자에게’와 피고가 제기한 선행 저작물이 일부 멜로디와 화성의 유사하지만 원고의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작품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선행 작품들과 원고의 작품은 유사하지만 원고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앞의 ‘외톨이야’ 사건에서 원고의 곡과 선행 작품이 유사하여 원고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과 상이한 법원의 결과를 가져왔다. 유사한 음악이 어떠한 기준에서 얼마만큼 유사한가를 논하기는 쉽지 않으나 두 사건 모두 원고의 곡이 제시된 선행 작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한쪽은 창작성을 인정 하였고 한쪽은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우리 법원이 음악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음악 작품은 기본적으로 다른 예술 작품과 다르게 선행 작품에 대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토대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낸다. 또한 가사를 멜로디(melody)에 담아 가창으로 전달함에 있어 인간의 가장 음역대가 한정되어 있고, 멜로디(melody)를 진행시키는 방법론에 있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음악작품을 순수한 장작으로 보기에 그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4] 이는 저작권법에서 최소한의 창작성을 요하는 기준과 일맥상통하여 새로운 음악작품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논리가 성립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두 개의 사건은 모두 원고의 작품

과 선행 작품의 멜로디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판결은 서로 다르게 나온 사건들로서 대중음악의 창작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그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다.

대중음악에는 창작적인 요소와 비창작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의 3요소 중 멜로디는 음을 사용하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특히 대중음악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음계 안에서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멜로디(melody)의 대중성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중음악의 창작적 요소는 멜로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 법원은 대중음악의 창작성 판단에 있어 선행 작품과 원고의 작품을 비교 할 때 그 비교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중음악에서의 비창작적인 요소라 함은 음악 창작자들에게 관례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의 요소들 이라고 정리된다. 이는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표현 중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관용구의 의미로서 대중음악에서 분류해보면 두가지로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는 대중음악의 기능적 요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의 요소들(장르, 리듬, 화성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누구나 아는 멜로디를 의미 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에 있어서 음악의 이러한 관용적인 멜로디에 대해서 정리된 바는 없으며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그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 Hyoung Kim, "A Study on Plagiarism Disputes in Korean Popular Music since 1990," Sang Myung University, 2012
- [2] Jae Kyoung Lee, "Standard for the Music Plagiarism", Chung-Ang Law Association, 2011
- [3] Chan Sook Park, "A Study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by the Plagiarism of Korean Pop Music", Sang Myung University, 2010
- [4] Pyung Soo Kim, "Dilemmas of Music Creation, Plagiarism and Pure Crea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2013
- [5] Randall Roberts Contact Reporter, "How the 'Blurred Lines' case could have chilling effect on creativity", Los Angeles Times, 2015

[6] https://en.wikipedia.org/wiki/Music_genre

[7] <https://en.wikipedia.org/wiki/Emotion>

[8] [https://en.wikipedia.org/wiki/Key_\(music\)](https://en.wikipedia.org/wiki/Key_(music))

[9] Swirsky v. Carey, 376 F.3d 841 (9th Cir. 2004).

[10] Johnson v. Gordon, 409 F.3d 12 (1st Cir. 2005).

[11] Pharrell v. Bridgeport Music, LA Cv13-06004 Jak (AGRx) (Central District Court of California, 2014).

김혜정(Hye-Jung Kim)

[정회원]



- 2008년 1월 ~ 2009년 12월 :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Master of Music, Jazz Studies (제스스터디 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대학원 뮤직테크놀로지 박사과정
- 2012년 9월 ~ 현재 : 케이씨 대학교 음악학부 기독교실용음악 조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실용음악교육, 음악저작권, 뮤직비즈니스